

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9. 18.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김정희 의원 등 7명
- 발의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(2025. 9. 18.)

2. 제정이유

- 본 조례안은 약물, 도박, 알코올, 흡연, 인터넷, 스마트폰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, 청소년 중독 예방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실태조사, 전문가 자문,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7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4. 관련근거

가. 관계 법령

- 「청소년보호법」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마약, 도박, 인터넷 중독 등이 증가되고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,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문제의 예방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4조에서 중독 예방 및 교육, 협력체계 구축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,
 - 안 제5조에서는 다양한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6조에서는 중독 예방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음.
 - 안 제7조에서는 중독 예방 및 교육 등 관련사업 수행 기관·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중독 예방 등에 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또한, 2025년 청소년 통계(2024년 기준, 여성가족부)에 따르면, 10대 청소년 42.6%(전년대비 2.5% 증가)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이 가운데 5.1%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, 중·고등학생 3.6%가 30일 내 흡연, 9.7%가 30일 내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

- 본 제정조례안은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적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